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39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박민규·진선미·황정아

노종면 · 김우영 · 조인철

박희승 · 이학영 · 이정헌

채현일 • 윤종군 • 김영진

김한규·최민희·한민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방송공사의 11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46조, 제49조및 제5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1명, 그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제8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 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한국방송공사는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②
이사 <u>11人</u> 으로 구성한다.	<u>13명</u>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지역 및 사회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u>다음 각 호에 따</u>
	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
	이 임명한다.
<u><신 설></u>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
	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u><신 설></u>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
	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
	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
	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단서</td>

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 섭대표노동조합에서 1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 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8 -----

----. 다만, 제

신설>

<신 설>

<신 설>

8·9 (생략)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 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제8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 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 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②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議決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1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 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 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 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